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가단50105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강영태, 김윤석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서

변론 종결2024. 9. 13.

판결 선고2024. 10.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971,338원 및 그 중 39,682,360원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2024. 3.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7.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1,237,2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1) 계약체결일 2022. 5. 4., 보증번호 C,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7. 5. 4., 피고 A이 2022. 5.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약정

2) 계약체결일 2023. 1. 11., 보증번호 D,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8. 1. 11., 피고 A이 2023. 1.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약정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2022. 1.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기간 종료 전일까지 보증료 요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고, 피고 A이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A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다.

다. 피고 A은 2023. 8. 22.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3. 12. 8. 중소기업은행에게 40,041,600원(= 원금 40,000,000원 + 이자 41,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8. 위 대위변제금 중 359,240원을 회수하였고, 이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39,682,360원(= 40,041,600원 - 359,240원)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78원[= 359,240원 × 8% × 1일(2023. 12. 8. ~ 2023. 12. 8.)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마.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88,900원이다.

바.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5.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26. E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3. 9.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반환받으면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23.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51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2023. 9. 2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39,971,338원(= 잔존대위변제금 39,682,360원 +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78원 + 법적절차비용 288,900원) 및 그 중 39,682,360원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다.

나. 채무자인 피고 A이 위 구상금채무 등을 면하고자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명의로 이전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F 앞으로 2023. 9. 20.자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을 통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피고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A이 매도대금을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 사해의 의사에 관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 A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일응 수익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E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던 재산으로서 위탁자인 A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피고 A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에게 다시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익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 B과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터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B은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광주시 G, H호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에서 F은행으로부터의 전세자금대출로 총당하였던 280,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원 중 29,000,000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70,000,000원의 지급일인 2023.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3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이던 I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위와 같이 반환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사무를 담당한 법무사 J의 직원이던 K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 점, ④ K은 위 돈으로 피고 A이 I조합에 부담하던 피담보채무 151,762,796원(2023. 9. 20. 기준) 중 피고 B이 입금한 위 1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62,796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를 소멸시킨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L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B은 2023. 9. 20. L에게 중개수수료 83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법무사 J에게도 같은 날 보수로 3,037,100원을 지급한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신탁등기 있음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일에 법무사 입회 하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⑦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서윤

별지